<신탁약관 부칙 신설>

1. 신탁약관상 허용되는 주식편입비율이 50%이상인 간접투자기구 (9개 펀드)

◇ **BEST 알부자 적립식 주식투자신탁 1호**

◇ **BEST 모아모아 적립식 주식투자신탁 1호**

부 칙

제 1 조(시행일) 이 신탁약관은 2005 년 6 월 7 일부터 시행한다.

제 2 조(수익증권 판매가격의 예외) 제 20 조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**15 시[오후 3 시] 경과후**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**제 3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**으로 한다.

제 3 조(수익증권 환매가격등의 예외) ①제 22 조에도 불구하고 수익자가 **15 시[오후 3 시] 이전**에 환매청구한 경우 환매청구일로부터 **제 2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환매청구일로부터 제 4 영업일에 환매대금을 지급**한다.

②제 22 조에도 불구하고 수익자가 **15 시[오후 3 시] 경과후**에 환매청구한 경우 환매청구일로부터 **제 3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환매청구일로부터 제 4 영업일에 환매대금을 지급**한다.

제 4 조(기존수익자의 우대) 제 23 조에도 불구하고 2005 년 6 월 7 일 이전에 매수한 수익증권에 대해서는 그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이 **89 일 미만인 경우 이익금의 70%, 179 일 미만인 경우 이익금의 50%, 364 일 미만인 경우 이익금의 30%**의 환매수수료를 부과한다.

◇ **BEST 파워 성장 주식투자신탁 1호**

◇ **미래든 적립식 주식투자신탁 1호**

◇ **Tops Easy Trading 시스템 혼합투자신탁 1호**

◇ **Tops Value 주식투자신탁 1호**

◇ **Tops 엄마사랑 어린이 적립식 주식투자신탁 1호**

부 칙

제 1 조(시행일) 이 신탁약관은 2005 년 6 월 7 일부터 시행한다.

제 2 조(수익증권 판매가격의 예외) 제 20 조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**15 시[오후 3 시] 경과후**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**제 3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**으로 한다.

제 3 조(수익증권 환매가격등의 예외) ①제 22 조에도 불구하고 수익자가 **15 시[오후 3 시] 이전**에 환매청구한 경우 환매청구일로부터 **제 2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환매청구일로부터 제 4 영업일에 환매대금을 지급**한다.

②제 22 조에도 불구하고 수익자가 **15 시[오후 3 시] 경과후**에 환매청구한 경우 환매청구일로부터 **제 3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환매청구일로부터 제 4 영업일에 환매대금을 지급**한다.

제 4 조(기존수익자의 우대) 제 23 조에도 불구하고 2005 년 6 월 7 일 이전에 매수한 수익증권에 대해서는 그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이 **89 일 미만인 경우** 환매수수료를 부과한다.

◇ BEST 장기주택마련 주식투자신탁 1호

부 칙

제 1 조(시행일) 이 신탁약관은 2005 년 6 월 7 일부터 시행한다.

제 2 조(수익증권 판매가격의 예외) 제 20 조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**15 시[오후 3 시] 경과후**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**제 3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**으로 한다.

제 3 조(수익증권 환매가격등의 예외) ①제 22 조에도 불구하고 수익자가 **15 시[오후 3 시] 이전**에 환매청구한 경우 환매청구일로부터 **제 2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환매청구일로부터 제 4 영업일에 환매대금을 지급**한다.

②제 22 조에도 불구하고 수익자가 **15 시[오후 3 시] 경과후**에 환매청구한 경우 환매청구일로부터 **제 3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환매청구일로부터 제 4 영업일에 환매대금을 지급**한다.

제 4 조(기존수익자의 우대) 제 23 조에도 불구하고 2005 년 6 월 7 일 이전에 매수한 수익증권에 대해서는 그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이 **3 년이 되는 날의 전일 미만인 경우** 환매수수료를 부과한다.

◇ BEST 인덱스 플러스 알파 파생상품투자신탁 1호

부 칙

제 1 조(시행일) 이 신탁약관은 2005 년 6 월 7 일부터 시행한다.

제 2 조(수익증권 판매가격의 예외) 제 20 조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**15 시[오후 3 시] 경과후**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**제 3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**으로 한다.

제 3 조(수익증권 환매가격등의 예외) ①제 22 조에도 불구하고 수익자가 **15 시[오후 3 시] 이전**에 환매청구한 경우 환매청구일로부터 **제 2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환매청구일로부터 제 4 영업일에 환매대금을 지급**한다.

②제 22 조에도 불구하고 수익자가 **15 시[오후 3 시] 경과후**에 환매청구한 경우 환매청구일로부터 **제 3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환매청구일로부터 제 4 영업일에 환매대금을 지급**한다.

2. 신탁약관상 허용되는 주식편입비율이 50%미만인 간접투자기구[채권형, MMF제외] (1개펀드)

◇ Tops 적립식 혼합투자신탁 1호

부 칙

제 1 조(시행일) 이 신탁약관은 2005 년 6 월 7 일부터 시행한다.

제 2 조(수익증권 판매가격의 예외) 제 20 조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**17 시[오후 5 시] 경과후**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**제 3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**으로 한다.

제 3 조(수익증권 환매가격등의 예외) 제 22 조에도 불구하고 수익자가 **17 시[오후 5 시] 경과후**에 환매청구한 경우 환매청구일로부터 **제 4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환매청구일로부터 제 5 영업일에 환매대금을 지급**한다.

3. 채권형, 파생상품 (50개펀드)

◇ BEST CHOICE 단기 채권투자신탁 1호
◇ BEST 지수연동 12M 채권투자신탁 SH-1, 2호
◇ G 뉴점프 단기 채권투자신탁 1호
◇ Tops 적립식 채권투자신탁 1호
◇ Tops 법인용 채권투자신탁 1호
◇ Tops 채권투자신탁 CH-1호 (법인용)
◇ Tops 국공채 채권투자신탁 1호
◇ Tops 국공채 중기 채권투자신탁 1호
◇ BEST 3 STAR 파생상품투자신탁 3, 4호
◇ BEST 투 스타 파생상품투자신탁 SS-2, 3, 4, 5호
◇ BEST 투 스타 파생상품투자신탁 LS-2호

부 칙

제 1 조(시행일) 이 신탁약관은 2005 년 6 월 7 일부터 시행한다.

제 2 조(수익증권 판매가격의 예외) 제 20 조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**17 시[오후 5 시] 경과후**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**제 3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**으로 한다.

제 3 조(수익증권 환매가격등의 예외) 제 22 조에도 불구하고 수익자가 **17 시[오후 5 시] 경과후**에 환매청구한 경우 환매청구일로부터 **제 4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환매청구일로부터 제 4 영업일에 환매대금을 지급**한다.

◇ BEST KOSPI200 Linked 채권투자신탁 1, 2, 3, 4, 5, 6, 7, 8호
◇ BEST KOSPI200 Linked 파생상품투자신탁 1, 2호
◇ BEST CHOICE 파생상품투자신탁 SS-1, 2, 3, 4, 5, 6, 7, 8, 9, 10, 11호
◇ BEST CHOICE 파생상품투자신탁 SSW-1호
◇ BEST CHOICE 파생상품투자신탁 LS-1, 2, 3, 4, 5, 6호

부 칙

제 1 조(시행일) 이 신탁약관은 2005 년 6 월 7 일부터 시행한다.

제 2 조(수익증권 판매가격의 예외) 제 20 조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**17 시[오후 5 시] 경과후**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**제 3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**으로 한다.

제 3 조(수익증권 환매가격등의 예외) 제 22 조에도 불구하고 수익자가 **17 시[오후 5 시] 경과후**에 환매청구한 경우 환매청구일로부터 **제 6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환매청구일로부터 제 6 영업일에 환매대금을 지급**한다.

◇ Tops ELS 채권투자신탁 1, 2, 3, 4, 5호

부 칙

제 1 조(시행일) 이 신탁약관은 2005 년 6 월 7 일부터 시행한다.

제 2 조(수익증권 판매가격의 예외) 제 20 조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**17 시[오후 5 시] 경과후**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**제 3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**으로 한다.

제 3 조(수익증권 환매가격등의 예외) 제 22 조에도 불구하고 수익자가 **17 시[오후 5 시] 경과후**에 환매청구한 경우 환매청구일로부터 **제 4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환매청구일로부터 제 6 영업일에 환매대금을 지급**한다.

◇ BEST 3 STAR 파생상품투자신탁 SSP-1호

부 칙

제 1 조(시행일) 이 신탁약관은 2005 년 6 월 7 일부터 시행한다.

제 2 조(수익증권 판매가격의 예외) 제 20 조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**17 시[오후 5 시] 경과후**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**제 3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**으로 한다.

제 3 조(수익증권 환매가격등의 예외) 제 22 조에도 불구하고 수익자가 **17 시[오후 5 시] 경과후**에 환매청구한 경우 환매청구일로부터 **제 4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환매청구일로부터 제 8 영업일에 환매대금을 지급**한다.

4. MMF (13개 펀드)

◇ BEST 신종 MMF A-3호 (개인가입용)
◇ BEST 신종 MMF 1호 (개인가입용)
◇ BEST 신종 MMF Ⅱ CH-1호 (법인가입용)
◇ BEST 국공채 신종 MMF 4호 (개인가입용)
◇ BEST 국공채 신종 MMF 5호 (법인가입용)
◇ BEST 국공채 신종 MMF 8호 (법인가입용)
◇ BEST 신종 MMF GS-1호 (법인가입용)
◇ BEST 신종 MMF GS-2호 (법인가입용)
◇ BEST 국공채 신종 MMF Ⅱ 5호 (개인가입용)
◇ BEST 신종 MMF S-7호 (법인가입용)
◇ BEST 국공채 신종 MMF HN-7호 (개인가입용)
◇ BEST 신종 MMF 12호 (법인가입용)
◇ BEST 국공채 신종 MMF CH-4호 (법인가입용)

부 칙

제 1 조(시행일) 이 신탁약관은 2005 년 6 월 7 일부터 시행한다.

제 2 조(수익증권 판매가격의 예외) 제 20 조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**17 시[오후 5 시] 경과후**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의 **다음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**으로 한다.

제 3 조(수익증권 환매가격등의 예외) 제 22 조에도 불구하고 수익자가 **17 시[오후 5 시] 경과후**에 환매청구한 경우 환매청구일로부터 **제 2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환매청구일로부터 제 2 영업일에 환매대금을 지급**한다.